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비자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금지 규정 신설〉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56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11.
- (3) 회 부 일 :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 ----- -----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 ----- ----. ②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5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4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u>1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u> <u>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u> <u>자</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하거나 이용하되, 지문·얼굴·홍채 등과 같은 생체정보²⁾에 대해서는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

□ 스마트폰 등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늘어나면서 출입통제 시스템, 스마트폰 잠금해제, AI 음성인식 서비스, 간편결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 이용이 일상화되었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로 티켓이나 신분증 확인 없이 공연장 등에 입장할 수 있게 될 예정임³⁾.

○ 그런데 생체정보는 유일성·불변성⁴⁾의 특성이 있어 유출 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민감정보가 추출⁵⁾되거나 위·변조되어 악용될 수 있으므로⁶⁾, 다른 개인정보보다 유출 및 오·남용 시 파급효

2)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법령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5호	생체정보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
「항공보안법」 제14조의2제1항	생체정보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	바이오정보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3) “표 대신 얼굴로...하이프, 2025년부터 공연장 '얼굴패스' 도입”(뉴스1, 2024. 12. 23.)

4)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함(불변성).

5) 얼굴, 정맥, 홍채 정보 등으로부터 인종·건강 등 민감한 정보 추출 가능

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지문, 얼굴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해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로부터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만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⁷⁾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생체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6) 생체인식정보의 특성(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p.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12.)

7)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재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지문, 얼굴인식 등을 통하여 간편로그인,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결제과정에서 현행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하나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 외에도 국가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생체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하여 생체정보의 보호 방안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9)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것으로 보임¹⁰⁾.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법령을 준수함에도 생체정보 활용을 원천차단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수집된 생체정보 활용 자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 처리가 가능한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10)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 생체인식정보의 규율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5. 1. 13.).